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5. 23(금) 평창군수(환경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6. 20(금)

다. 상정일자 : 2014. 6. 20(금)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환경과장)

-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41215호(2009.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가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정·시행되어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1회용품 사용 등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09년 4월6일 시행령에 반영되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